내집마련주택부금 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내집마련주택부금 거래는 적립식예금약관외에 주택건설촉진법,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 2 조 월저축금 입금

- ① 거래처가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주택저축으로 거래할 때는, 매달일정한 금액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②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경우 거래처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입금하는 저축금은 1회 분을 입금한 것으로 합니다.
- ③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내집마련주택부금특약 제 7 조의 청약부금으로 거래하는 때는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④ 청약겸용 계좌인 경우에는 당초 약정기간 내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저축금액은 주택공 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예금 최고 예치금액으로 제한합니다.

제3조 이자

- ①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이율이 바뀐 때마다 그 바꾼 이율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만기일 후 청구할 때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이율이 바뀐 때마다 그 바꾼 이율로 기간 구분하여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 - 단, 내집마련주택부금을 특약 제 7 조의 청약부금으로 거래할 때, 이 부금 가입자의 이자 선 지급 요청에 따라 원금에 부리된 이자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이자계산시 이를 제하고 셈합니 다.
- ③ 자동연장된 기간의 이율적용은 중도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4 조 계약기간 연장

청약겸용으로 가입된 계좌는 계약기간 종료시 당초 고객과 약정한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일을 1 년 단위로 매년 자동연장하여 관리합니다.

제 5 조 관련대출

거래처는 대출 신청시 은행의 여신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
제 6 조 법령위반 때 처리

내집마련주택부금을 근로자주택저축으로 거래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한 가입자격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, 근로자주택저축으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.

제7조 청약부금

내집마련주택부금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약부금으로 거래한 거래처는 동규칙 에서 정한바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.

부 칙

구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은 2002.9.23 부터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.